

 <b>안산대학교</b>	<b>총장후보추천규정</b>	규정번호	3-8-34
		제정일자	2006.05.24.
		개정일자	2023.05.01.
		개정차수	5차
		소관부서	교무처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안산대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 교수회규정 제7조에 의거하여 총장 후보 추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총장후보선출) 총장후보는 총장후보 선거에 입후보하는 자(이하 "입후보자"라 한다) 중에서 득표순위에 따라 2인을 선출한다.

## 제2장 총장후보추천관리위원회

제3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총장은 총장후보의 선출에 필요한 업무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총장임기만료일 100일전까지 총장후보추천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을 교무처장에게 명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계열별(간호보건계열, 사회실무가정예능계열, 공업계열)로 3인을 선출한다. 다만, 입후보자는 위원을 겸할 수 없다.

③ 위원회는 위원회가 구성된 날로부터 신임 총장이 임명되는 날까지 존속한다.

제4조(위원회 조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 간사 1인을 둔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 간사는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며, 간사는 회무 및 관련 업무를 기록, 보존한다.

④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입후보자의 등록 및 심사

2. 선거관리

3. 기타 총장후보선출에 관한 주요사항

제6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위원 3분의 10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0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위원회 업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진행한다.

1. 선거일시 및 장소의 공고

2. 선거인 명부작성 및 열람

3. 투표 및 개표에 관한 업무

4. 선거장소, 투표 및 개표장 관리

5. 선거결과의 공고

6. 선거결과에 대한 이의 접수 및 심사

7. 기타 선거와 관련된 업무

## 제3장 선거권 및 피선거권

제8조(선거권) ① 선거인 명부 확정일 현재 대학에 재직 중인 일반 전임교원, 정규직원, 무기 계약직원은 선거권을 가진다. 다만, 1년 계약직, 휴직, 정직자 및 공무국외여행 중인 자는 제외한다.

② 선거인 명부는 교무처에 의뢰하여 학과 및 부서단위로 작성하고 투표일 10일 전까지 위원회에서 확정한다.

제9조(피선거권) 제12조 1항에 해당하는 대학 전임교원으로서 학교발전에 공헌할 수 있다고 인정된 자로 한다.

#### 제4장 선거절차 및 방법

제10조(선거 시기) ① 선거 시기는 총장 임기 만료 70일 이전으로 하며, 선거일시는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② 총장이 임기만료 이내에 궐위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총장후보추천을 위한 선거를 실시한다.

제11조(선거 공고) ① 위원회는 최초 소집일로부터 5일 이내에 선거일정을 공고한다.

② 위원회는 선거일시, 장소,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선거일 5일전까지 지정된 장소에 공고한다.

제12조(입후보자의 자격과 등록) ① 입후보자의 자격은 예수그리스도를 믿는 세례교인으로서 덕망이 있고 교육경력이 풍부하며 학원관리 능력이 탁월하다고 판단되는 자로 한다.

② 입후보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위원회에 선거일 공고후 7일째인 1일간 등록 한다.

1. 총장 입후보 등록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약력서
3. 후보소견서(A4용지 2매 이내)
4. 직무수행계획서(A4용지 5매 이내)
5. 경력증명서(안산대학교의 재직경력은 인사기록카드 사본으로 대체할 수 있다.)
6. 선거권자 6분의 1이상의 추천서 (다만, 충복된 추천인의 추천은 무효로 한다.)

제13조(참관인) ① 입후보자는 후보 등록 시에 참관인 1인의 명단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참관인은 투표 및 개표과정을 참관하고, 이의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에게 그 시정을 요청 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인정될 때 위원장은 즉각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4조(선거운동) ① 위원회는 입후보 등록 시 제출된 입후보자의 약력서, 소견서와 직무수행 계획서 사본을 투표일 5일전 까지 투표권자들에게 배부하는 것으로 선거운동을 대신한다.

② 입후보자 및 지지자들은 일체의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위배되는 행위가 있을 때는 위원회가 당해 입후보자에게 주의 또는 경고하고 이를 공개할 수 있다.

④ 보직자는 직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제15조(입후보 사퇴) ① 입후보자가 사퇴하고자 할 때에는 본인이 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입후보 사퇴는 투표일로부터 6일전까지 하여야 한다.

제16조 (교수회 소집요청) 위원장은 입후보자 등록심사 및 공고를 마친 후 총장후보 선출을 위한 교수회 소집을 교수회 의장에게 요청하고, 교수회 의장은 요청을 받으면 교수회의를 선거일에 소집하여야 한다.

제17조(정견발표) ① 투표일 5일 이전에 각 입후보자의 정견발표 및 질의를 갖는다.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② 총장후보 선출을 위한 교수회의에서 투표개시 직전에 각 입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10분 이내로 하며, 발표순서는 추첨으로 결정한다.

제18조(투표용지) 투표용지는 별지 제2호의 서식으로 하되, 제1차 투표, 제2차 투표 용지를 다르게 만든다.

제19조(투표용지 교부) 위원회는 투표자가 본인임을 확인하고 선거인명부에 날인한 후 투표 용지를 교부한다.

제20조(투표 방법) ① 투표방법은 무기명 직접 비밀투표로 한다.

② 투표는 1인1매로 하고, 투표용지에 해당 지지자 1인을 기표한다.

제21조(개표 및 보관) ① 위원장은 투표종료와 함께 개표를 실시한다.

② 위원회는 개표후 투표함 및 투표용지를 총장 임용시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제22조(투표록과 개표록) 위원회는 투표록과 개표록을 작성하고 출석위원 전원이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이유 없이 서명, 날인을 거부한 위원이 있을 때에는 그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23조(무효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투표자는 무효표로 한다.

1. 위원장의 직인이 없거나 정규 투표용지가 아닌 경우

2. 지정된 필기구로 기표하지 않았거나, 지정된 기표 이외의 다른 표시가 있는 경우

3. 기타 위원회에서 무효로 판정한 경우

제24조(유효, 무효표의 판정) 유효, 무효표의 판정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위원회 위원 재적 과 반수의 찬성으로 이를 결정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무효표로 한다.

제25조(총장후보의 결정) ① 제1차 투표에서 총 투표수의 과반수를 얻은 입후보자가 있을 경우에는 과반수 득표자와 차점자를 총장 후보로 확정한다.

② 제1차 투표에서 총투표자의 과반수를 얻은 입후보자가 없을 경우에는 제2차 투표를 실시하되, 제2차 투표에서는 과반수 여하에 관계없이 득표순위에 따라 2인을 총장 후보로 확정한다.

③ 동일 득표자에 대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26조(이의신청) ① 선거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입후보자는 확정 공포일로부터 2일 이내에 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이의 신청을 3일 이내에 심사하여 그 결과를 이의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7조(총장후보 확정공포 및 투표결과 통보) 위원회는 개표 종료 후 지체 없이 2인의 총장 후보를 공포하고, 공포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를 총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8조(총장후보 추천) ① 총장은 회의록 및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총장후보를 지체 없이 재단 이사회에 추천하여야 한다.

② 총장후보가 사퇴할 경우 입후보자 중 차점자가 총장후보가 되며, 차점자가 없을 경우 재선거를 실시한다.

제29조(재선거) 확정된 총장후보가 사퇴하고 차점자가 없을 경우 10일 이내에 재선거를 실시한다. 다만 재선거 실시 기간 내에 선거가 이루어지기 어려울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15일 이내로 연기할 수 있다.

제30조(선거관리비용) 선거관리에 필요한 행정업무와 비용은 대학에서 지원한다.

제31조(기타사항)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6년 5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0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3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